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 경 우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79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30일

발 의 자 : 김경우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제리,
김호평, 문장길, 송아량,
이광성, 이동현, 이정인,
이호대, 장인홍, 홍성룡
의원 (12명)

1. 제안이유

- 노인·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신체적·정신적인 불완전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보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·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 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”을“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장애인·노인 등의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
2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
3.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</p> <p>①·②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장애인·노인 등의 취약계층(이하 “취약계층”이라 한다)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</u></p> <p>2. <u>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3항 을 신설 하여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(제3조제1항제1호)

1) 추계결과

- 총 비용 ≙ 250,000천원(연평균 5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취약계층 체육시설 이용현황 실태조사 (제4조 제3항 제1호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	소계(b)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총 비용(b-a)	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
2) 비용추계 전제

-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이용현황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
- 실태조사는 서울시 관광체육국 “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 실태조사”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3) 비용추계 산식

○ 비용추계 합계액 ≒ 총 250,000천원 (연 평균 50,000천원)

-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이용현황 실태조사 : 연간 50,000천원

※ 서울시 관광체육국 “생활체육지도자 근무여건 실태조사” 사업비를 준용

나. 기술적 추계 곤란(제3조제1항제2호)

○ 같은 조례안 제4조제3항제2호 “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” 과 제3호 “그 밖의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 의 경우,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